

KISTEP 브리프 | 기술동향



대형 연구형 R&D 사업계획검토 제도의 이해 및 점검 주안점

저자 | KISTEP 이광현·권재영·장희명



대형 연구형 R&D 사업계획검토 제도의 이해 및 점검 주안점

2026.10.27. 사업기획점검팀 이광현 팀장/연구위원, 권재영 연구위원, 장희명 선임전문관리원

요약문

- (도입 배경)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신속·유연한 R&D 투자 의사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연구형 R&D에 특화된 사전점검 제도인 사업계획검토가 새롭게 도입
- (제도 개요) 사업계획검토는 대형 연구형 R&D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심의 이전 단계에서 정책적 필요성과 기획 완성도를 점검하는 절차임
- (점검 방향) 사업추진 필요성부터 계획의 구체성,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까지 사업기획안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되, 당락 판단이 아닌 보완사항 도출에 초점을 둠
- (제도 현황) '26년 상반기 초회 운영 결과, 사업 기획의 논리와 구체성이 미흡한 사례가 공통적으로 확인된 만큼, 신규사업 기획 시 이러한 점검 관점을 참고하여 논리적 근거와 구체성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

1 대형 연구개발사업 사전점검체계 개편 배경

- (R&D 사전점검제도 운영 경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형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 절차로서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R&D 예타)가 '08년부터 시행되어 18년간 연구개발 투자 결정의 핵심 사전검토 절차로 운영
- '99년 도입된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3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타당성, 재정 투자 필요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추진 여부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¹⁾
- R&D 분야에는 '08년 도입되었으며, '18년부터 과학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심층 평가를 위해 과 기정통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구조로 전환되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을 통해 조사 수행²⁾
 - ※ '18년 위탁 이후 '24년까지 162개 사업(111조 원) 예타 조사(→83개 시행, 36조 원)³⁾

1) 「국가재정법」 제38조

2) 「국가재정법」 제38조의3('18.4.17. 개정)

3)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차보고서(2024)

□ (기술패권 시대 신속 투자의 중요성) 글로벌 기술경쟁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적기 투자가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였으며, 대형 R&D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투자 의사결정 체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주요국은 AI, 양자 등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 적시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

○ 반면, 대형 R&D 사업은 기존 검토체계 하에서 기획부터 예산 투입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어 온바, 이에 따른 기술환경 대응력 저하에 대한 논란이 존재

- 사업기획(1년) → 예타(2년, 평균 2회 이상 재도전) → 예산반영(1년) 등 기획~착수까지 평균 4년 이상 소요⁴⁾

※ 예타 통과율은 약 20% 수준으로, 예타 대상선정부터 재도전 없이 한 번에 통과하는 경우는 약 8%

□ (대형 R&D 유형별 차별화 관리 필요성) 연구형 R&D와 구축형 R&D는 사업의 성격·리스크·관리 방식이 상이하여 단일 조사체계 적용에 한계가 있어, 예타 폐지 이후 후속 제도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전점검 체계 마련

○ (대형 R&D 정의 및 유형) 총사업비 1천억 원(국비 500억 원 이상)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이하 R&D사업) 중 연구시설·장비, 공간조성, 우주분야 및 이에 준하는 사업*은 구축형 R&D, 그 외는 연구형 R&D로 구분⁵⁾

* 2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포함하는 사업, 500억 원 이상의 개별/시스템 연구시설장비를 포함하는 사업, 연구 시설장비비의 합계가 1천억 원 이상인 경우⁶⁾

○ (연구형 R&D) 기술개발 목표 및 추진 내용 중심의 사업인 만큼, 기획의 완성도와 투자 적정성 점검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상

○ (구축형 R&D) 가속기·발사체 등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매몰비용이 막대하며, 완료 이후에도 경직성 경비가 지속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 전(前) 단계부터 구축 완료까지 단계별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

- 기획 초기 단계의 검토 결과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아 추가 조사(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⁷⁾)가 빈번히 수행되는 등 일회성 검토 방식의 한계가 있음

- 사업 단계별 심층 점검 및 전 주기에 걸친 관리 필요

※ 대형 연구시설(1천억 원 이상) 연간 운영비 약 3,088억 원⁸⁾

□ (본고의 목적 및 범위) 대형 연구개발사업 사전점검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연구형 R&D를 대상으로 도입된 사업계획검토 제도의 수립 경과와 주요 내용을 살피고, 초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안착 및 대형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4) 대형 연구개발사업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안)(과기정통부, '26.2.)

5)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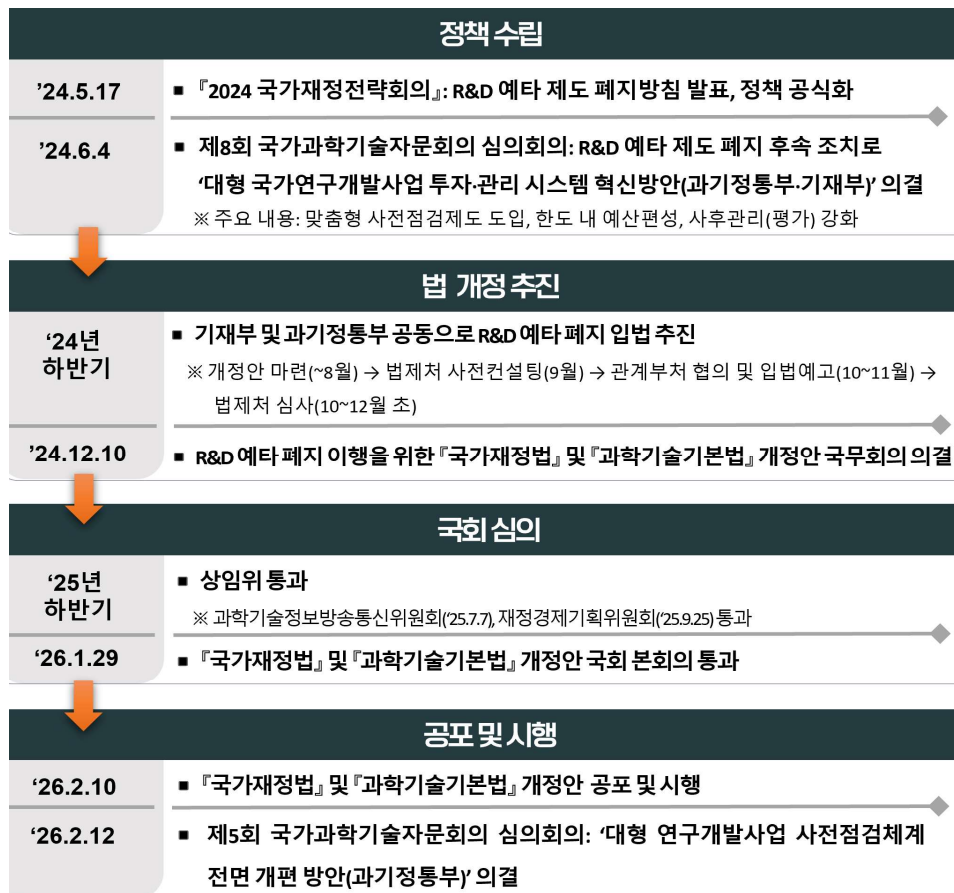
6)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과기정통부고시 제2026-41호)

7)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2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3조(기획처 훈령)

8) '24, 장비활용포털 기준

2 사업계획검토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 (법령 개정 추진 경과) '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 폐지가 공식화된 이래, 과기정통부·기획처 공동으로 후속제도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추진, '26년 입법 완료
- R&D 예타 폐지 및 맞춤형 사전점검체계 도입은 '24년부터 공식화되어 추진해왔으며, '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
- 과기정통부와 기획처는 R&D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 시행을 위한 입법 추진과 함께 맞춤형 점검 체계 세부 운영방안⁹⁾을 수립하여 발표
 -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25년 각 상임위(재경위, 과방위)를 통과하고 '26년 1월 국회 본회의 통과
 - '26년 2월, R&D 예타 폐지 이후 시행할 맞춤형 점검체계 세부 운영계획을 담은 '대형 연구개발사업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방안' 발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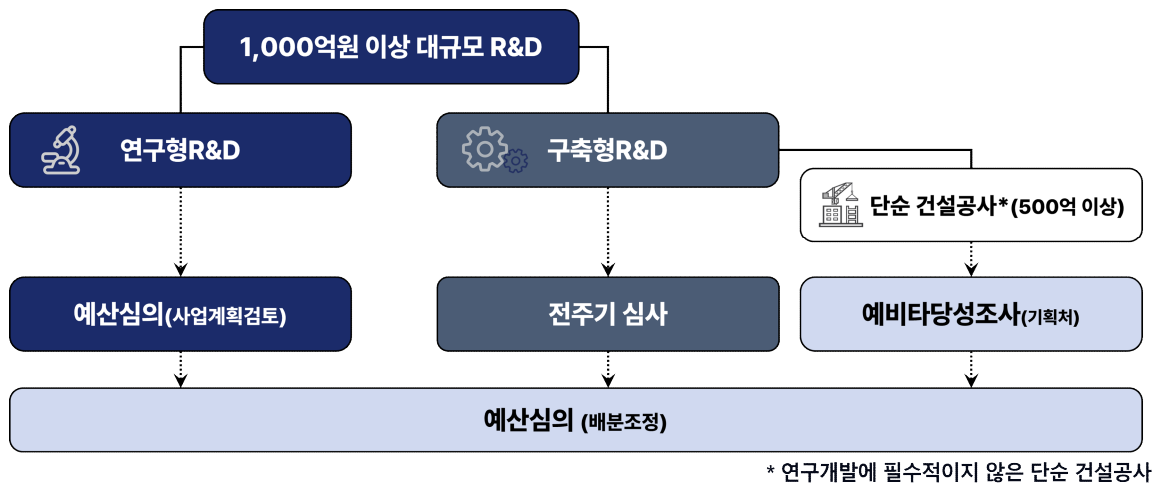


[그림 1] R&D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수립 경과

※ 출처: 기획처 및 과기정통부 보도자료('24.6.4., '24.12.10., '26.1.29., '26.2.12)

9) 대형 연구개발사업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안)(과기정통부, '26.2.)

- (개정 법안 주요 내용) 「국가재정법」은 예타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은 1천억 원 이상 연구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계획검토,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맞춤형 심사제도 시행 근거를 신설(참고1)
- 과기정통부는 사업계획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수립(매년 3월 15일)하고,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매년 6월 30일)할 것을 개정법에 명시



[그림 2] 개정 법안에 따른 대형 R&D 사전 점검체계¹⁰⁾¹¹⁾

- (과기정통부 고시 제정) 사업계획검토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형 연구개발 사업 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과기정통부고시 제2026-15호) 제정

3 사업계획검토 제도 주요 내용 및 운영체계

- (개념 및 목적) 1천억 원 이상 대형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심의 이전 단계에서 정책적 필요성, 기술개발 방향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 점검하여 신속한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전 검토 절차
- (검토 대상)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구분¹²⁾
 - ※ 기간개방형 사업(사업기간의 정함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은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함
- (신규사업) 검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계획검토 수행
- (계속사업) 검토 대상에 해당하고 과기정통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검토 수행

10) 개정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참고

11) 대형 연구개발사업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방안(안)(과기정통부, '26.2.)

12)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과기정통부고시 제2026-15호)

〈표 1〉 사업계획검토 대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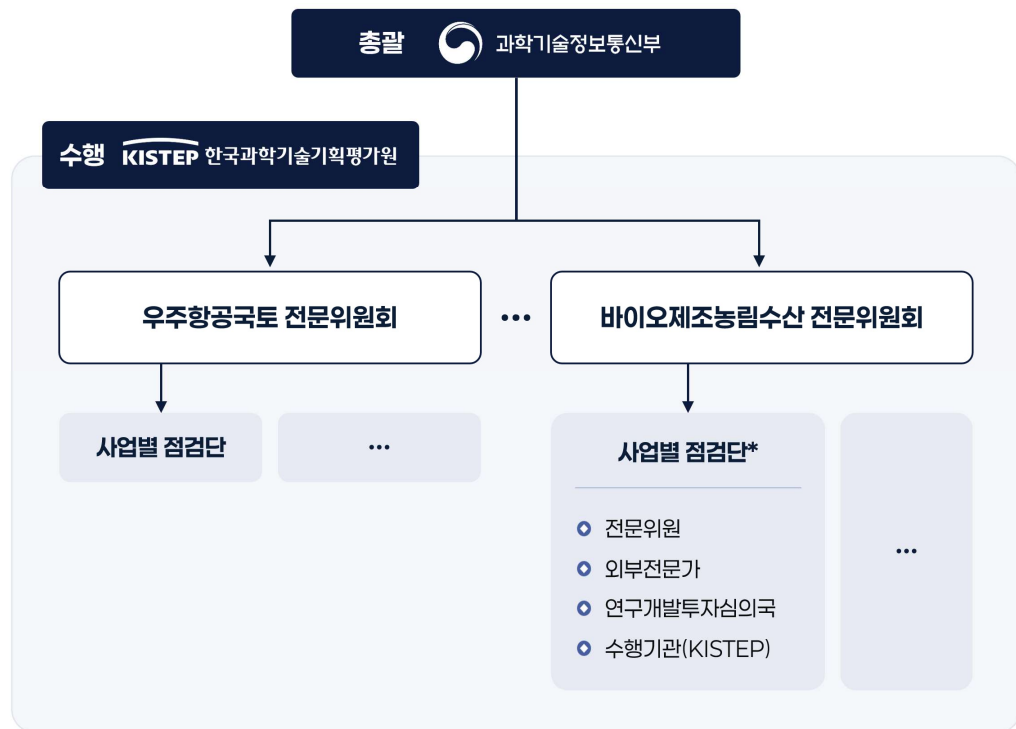
구분	요건
신규사업	1. 사업기획 단계에서 사업계획 검토 규모인 사업
	2. 혁신본부 예산 배분·조정 이후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가 된 사업
계속사업	1.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 조정으로 사업계획검토 규모로 증가한 사업 ※ 단, 과목구조개편 성격으로 사업간 통합인 경우는 제외
	2. 사업계획검토를 받은 대형사업 중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등 변경이 있는 사업
	3. 예타(또는 적정성검토 및 적정성 재검토)를 받은 사업 중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는 사업

※ 출처: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과기정통부고시 제2026-15호) 제3조

□ (추진체계) 과기정통부 총괄 하에 수행기관(KISTEP)이 사업계획검토를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계획검토 대상사업 접수·선정, 사업계획검토 요청, 최종 결과 검토 등 사업계획검토 제도를 총괄 운영하며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활용
-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로서 사업계획서 종합 검토 및 사업 간 조정을 수행하고, 투자 우선순위·중복성·연계성 등을 고려한 점검 결과 도출
- (수행기관(KISTEP)) 사업계획검토 총괄 수행기관으로서 사업별 점검단 구성·운영을 통한 사업 계획검토 수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사업별 점검단) 전문위원, 외부 전문가, 과기정통부 예산배분·조정 담당, KISTEP 간사위원(8명 내외)으로 구성하여 개별 사업의 필요성·시급성·계획 구체성·재정 적정성 등을 종합 점검하고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 도출¹³⁾
- (사업 기획부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 제출, 점검 과정에서 자료 제공 및 소명, 사업계획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보완 및 예산 요구

13) 대형 연구개발사업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안)(‘26.2.5., 과기정통부)



[그림 5]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추진체계

* 사업별 점검단 구성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에 포함
(대형 연구개발사업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안)(‘26.2.5., 과기정통부))

□ (추진절차) 신규사업 사업계획검토의 경우, 수요조사·사업계획서 접수부터 점검단 운영을 통한 검토 수행, 예산 배분·조정 연계까지 일련의 과정을 연 1회 정례적으로 운영

○ (신규사업) 사전 수요조사(6월 말~7월 말) → 사업계획서 접수(10월 31일) → 사업계획검토 수행(11월~차년도 3월) → 결과통보(3월) → 예산요구(5월)

○ (계속사업) 과기정통부에서 사업계획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계속사업에 대하여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며, 요청을 받은 부처는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비정례적 운영)

〈표 2〉 사업계획검토(신규사업)에 따른 예산배분·조정 일정

전년도						당해 연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사전 수요조사 (부처 →과기부)	사전 수요조사 결과통보 (과기부 → 부처)	사업계획서 접수 (부처 → 과기부)	사업계획검토 수행 (KISTEP)					결과 통보 (과기부 →부처)	사업계획보완 및 예산요구 (부처 → 과기부)	예산 배분·조정 (과기부)	

4 사업계획검토 점검항목 구성 및 점검 방향

- (점검 방향) 사업계획검토는 사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평가가 아닌 기획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며, 경제성 분석을 제외하고 사업추진 필요성과 계획의 구체성·완성도를 중심으로 핵심 항목에 대한 신속한 점검 수행하여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
 - 사업 기획 초기 단계에서 정책적 타당성과 기획 완성도를 사전에 점검하여 보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최소화하고 정책적 성과 달성을 촉진
 - 개별 항목에 대한 지적 위주의 점검이 아니라, 사업추진 필요성부터 자원조달 방안까지 사업계획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질의를 통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점검
- (점검항목 구성) 사업추진 필요성과 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를 분석하기 위한 4개 대항목, 6개 중항목 및 16개 핵심질의로 구성
 -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문제·이슈의 적절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정부지원의 적합성 및 정책적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사업 추진 필요성 검토
 - 사업 기획의 출발점이 되는 문제/이슈 자체가 타당한지를 확인함으로써, 이후 목표·내용·규모 검토의 전제를 점검
 -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문제·이슈와의 연계성, 세부활동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의 구조적 완결성 검토
 - 문제/이슈 해결을 위해 설계된 목표와 활동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구조로 짜여 있는지를 확인
 - (유사·중복성) 부처 내·외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기존 정책수단 및 R&D 사업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 검토
 - 한정된 재정 여건상 신규 사업이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차별적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확인
 - (사업규모의 적정성) 근거 기반 사업규모 설정 여부, 자원조달 방안 및 정부·민간 분담구조 등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 검토
 - 사업 내용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계획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지를 별도로 확인

〈표 3〉 사업계획검토 점검 항목

대항목	중항목	주요 검토내용	핵심질의
1.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1-1. 정부지원의 필요성	•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검토	1-1-1. 문제/이슈 파악
			1-1-2. 정부지원의 적합성
			1-1-3. 사업추진의 시급성
			1-1-4. 사업추진의 효과성
	1-2. 정책적 부합성	• 국가 정책방향과의 정합성 및 법적 위험 검토	1-2-1. 상위계획 부합성
			1-2-2. 법·제도적 위험요인
2. 사업계획의 구체성	2-1. 사업목표의 적절성	• 목표가 구체적이고 문제해결과 연결되는지 검토	2-1-1. 사업목표와 문제/이슈 연계성
			2-1-2. 사업목표의 구체성
	2-2. 세부활동의 적절성	• 세부활동들이 목표 달성에 유기적으로 기여하는지 검토	2-2-1. 사업목표와 세부활동의 연계성
			2-2-2. 시간적 선후관계
			2-2-3. 추진체계의 적절성
3. 유사 중복성		• 기존 정책수단 및 R&D 사업과의 연계성·차별성 검토	3-1. 부처 내 포트폴리오
			3-2. 부처 외 포트폴리오
4. 사업 규모의 적정성		• 예산 규모와 조달 계획이 합리적인지 검토	4-1. 근거 기반 사업 규모 도출의 적절성
			4-2. 자원조달 방안
			4-3. 정부/민간 분담

※ 출처: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과기정통부고시 제2026-15호) 별지 제2호 재구성

□ (점검항목별 주요 확인사항) 각 항목별로 사업의 논리적 완결성, 정책 정합성, 추진체계의 현실성, 예산 규모의 근거 등을 중심으로 기획안의 완성도와 보완 필요사항을 점검

①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표 4〉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구성

중항목	핵심 질의
정부지원의 필요성	• [문제/이슈 파악] 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는 구체적이고 적절히 파악되었는가? • [정부지원의 적합성] 식별된 문제/이슈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 [사업추진의 시급성] 문제/이슈의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되는가? • [사업추진의 효과성] 문제/이슈 해결의 기대효과가 명확하며, 사업 추진방식(기간개방형* 등)이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는가? *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
정책적 부합성	• [상위계획 부합성] 정책적 근거인 상위계획과 부합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법·제도적 위험요인] 해당 분야 관련 법/제도/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① 정부지원의 필요성

- (의의) 정부지원의 당위성, 조기자원의 시급성, 지원에 따른 효과성 등을 문제/이슈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점검항목
- (핵심질의 1: 문제/이슈 파악) 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가 구체적이고 적절히 파악되었는지를 확인
 - (분석 관점) 문제/이슈의 구체성과 신뢰성을 기준으로, 식별 절차의 적절성과 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
 - (중점 준비사항) 문제/이슈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전분석 자료·통계 등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시
- (핵심질의 2: 정부지원의 적합성) 식별된 문제/이슈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를 점검
 - (분석 관점) 해당 분야의 시장실패 여부와 민간 역할의 한계를 확인하고, 연구개발 이외 정책수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절성과 해결가능성을 검토
 - (중점 준비사항)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시장실패, 외부성 등)와, 연구개발 이외 정책수단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시
- (핵심질의 3: 사업추진의 시급성) 문제/이슈의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되는지를 판단
 - (분석 관점) 문제/이슈가 시간에 따라 잠재적 단계에서 현재 진행 단계로 변화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변화 양상 예측과 대응 시기의 적절성을 검토
 - (중점 준비사항) 미래예측조사·현안분석 등을 통해 문제/이슈의 시간적 변화를 분석하고, 최적 대응 시기에 대한 근거를 갖출 필요

○ (핵심질의 4: 사업추진의 효과성) 문제/이슈 해결에 따른 기대효과가 명확하고, 사업 추진방식이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봄

- (분석 관점) 효과의 시간적·공간적 범위와 분야(과학기술적·사회경제적·정책적)별 범주, 그리고 효과의 규모를 기준으로 검토하며, 기간개방형사업의 경우 계속추진 당위성 및 기한사업 대비 효과성을 함께 검토

- (중점 준비사항) 기대효과와 범주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간개방형사업인 경우에는 계속 추진의 당위성 또는 기한사업 대비 효율성에 대한 입증 자료를 준비

㉠ 정책적 부합성

○ (의의) 기존 국가단위 정책수단과의 일관성 및 정합성 측면에서, 신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부합 여부를 분석하는 점검항목

○ (핵심질의 1: 상위계획 부합성) 정책적 근거인 상위계획과 부합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 (분석 관점)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관련 법정계획을 기본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기술분야가 상위계획과 일관성 및 부합성을 갖추었는지를 검토

- (중점 준비사항) 사업계획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가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관련 법정계획 등 상위계획에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부합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할 필요

○ (핵심질의 2: 법·제도적 위험요인) 해당 분야 관련 법/제도/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를 점검

- (분석 관점) 사업의 수행에서부터 성과 활용까지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법적 근거의 충분성, 절차상 위험, 성과물 관련 위험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여부를 확인

- (중점 준비사항) 사업추진의 근거법령이 충분한지, 타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하고, 절차상·성과물 관련 위험요인과 이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대응계획을 함께 준비할 필요

② 사업계획의 구체성

〈표 5〉 ‘사업계획의 구체성’ 구성

중항목	핵심 질의
사업목표의 적절성	• [문제/이슈 연계성] 사업목표와 해결한 문제/이슈와의 연관 관계가 존재하는가? • [사업목표 구체성] 사업목표가 기대효과와 단계별 성과목표(기간개방형* 등의 경우)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
세부활동의 적절성	• [사업목표 연계성] 세부활동(혼합형사업*의 경우 시설·장비 구축 포함)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하는가? * 시설·장비 구축이 포함된 사업 • [시간적 선후관계]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는 논리적인가? • [추진체계 적절성] 주요 의사결정 체계 및 추진주체 간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가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사업목표의 적절성

- (의의) 사업의 궁극적인 취지를 고려한 사업목표 설정 여부와 사업목표의 구체성을 검토하는 점검항목
- (핵심질의 1: 사업목표와 문제/이슈 연계성) 사업목표와 해결한 문제/이슈와의 연관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
 - (분석 관점) 사업목표 달성을 통해 도출된 문제/이슈가 어떻게, 얼마나 해결될 수 있는지를 거시적 환경·산업·기술·수혜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 (중점 준비사항) 사업목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와 개념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문제/이슈가 다수인 경우 목표를 통한 해결 범위 및 정도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
- (핵심질의 2: 사업목표의 구체성) 사업목표가 기대효과와 단계별 성과목표(기간개방형 사업 등의 경우)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점검
 - (분석 관점) 사업목표에 문제/이슈 해결 정도가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객관적인 측정수단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며, 기간개방형사업의 경우 단계별 목표의 논리적 연계성과 관리가능성을 함께 검토
 - (중점 준비사항) 사업목표에 구체적인 기대효과와 측정 가능한 지표를 제시하고, 기간개방형 사업인 경우에는 단계별 성과목표와 그 논리적 연계성을 명확히 준비할 필요

㉡ 세부활동의 적절성

- (의의) 사업계획에 따른 세부활동의 사업목표와의 연계성, 세부활동 간 선후관계,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점검항목
- (핵심질의 1: 사업목표와 세부활동의 연계성) 세부활동(혼합형사업의 경우 시설·장비 구축 포함)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를 검토
 - (분석 관점) 내역사업 및 과제의 목표가 사업목표와 계층적으로 연계되는지를 확인하고, 혼합형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장비 구축계획의 부합성·적합성·연계성·운영계획을 함께 검토
 - (중점 준비사항) 세부활동 간 계층적 목표 연계 구조를 기술계통도·업무분해도 등으로 제시하고, 혼합형사업인 경우에는 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및 운영계획을 뒷받침할 구축계획서를 준비할 필요
- (핵심질의 2: 시간적 선후관계)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가 논리적인지를 확인
 - (분석 관점) 세부활동 간 의존관계 및 기간 산정이 현실적으로 설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불필요한 중복이나 선후관계로 인한 일정 지연 여부를 확인
 - (중점 준비사항) 세부활동 간 투입-산출의 논리적 연계와 일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불필요한 중복이나 지연 요인이 없음을 설명할 필요

- (핵심질의 3: 추진체계의 적절성) 주요 의사결정 체계 및 추진주체 간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가 적절히 제시되었는지를 판단
 - (분석 관점) 추진주체별 역할분담과 법·제도적 근거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민간 부담이 포함된 경우 민간 참여의 타당성을 함께 확인
 - (중점 준비사항) 추진체계상 역할분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민간 부담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참여의향서 등 민간 참여 타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

③ 유사 중복성

〈표 6〉 ‘유사 중복성’ 구성

핵심 질의
• [부처 내 포트폴리오] 해당 분야에 대한 부처 차원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대상사업의 위치가 전략적이고 차별화되게 설계되었는가? • [부처 외 포트폴리오] 해당 분야에 대한 타 부처 추진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은 마련되었는가?
○ (의의) 부처 단위의 기존 정책수단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 측면에서,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추진 당위성을 검토하기 위한 점검항목 ○ (핵심질의 1: 부처 내 포트폴리오) 해당 분야에 대한 부처 차원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대상사업의 위치가 전략적이고 차별화되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 - (분석 관점) 신규 추진사업의 차별성과 연계성을 부처 내 포트폴리오 범위에서 검토하며,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요소 배제 여부 및 유관 사업과의 연계·협력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를 확인 - (중점 준비사항) 부처 내 해당 분야 포트폴리오 상에서 신규사업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사업 목적·내용·추진체계·수행주체 등 기본 속성을 기준으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 ○ (핵심질의 2: 부처 외 포트폴리오) 해당 분야에 대한 타 부처 추진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이 마련되었는지를 점검 - (분석 관점) 핵심질의 1(부처 내 포트폴리오)과 유사한 관점에서, 분석 대상의 범위를 타 부처 포트폴리오 및 타 부처 사업으로 확장하여 차별성과 연계방안을 검토 - (중점 준비사항) 타 부처 추진 유사·인접 사업과의 목적·대상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다부처 사업 또는 부처 연계형 사업인 경우 부처 간 역할분담·협의 내용·연계 및 협력 방안을 함께 준비할 필요

④ 사업 규모의 적정성

〈표 7〉 ‘사업 규모의 적정성’ 구성

핵심 질의
• [근거 기반 사업 규모 도출의 적절성] 사업비 규모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적절한 규모로 추정되었는가? • [재원조달 방안] 지출한도를 고려한 재원조달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정부/민간 분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민간, 지자체 등과의 재원분담 방식이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의의) 총사업비를 포함한 사업의 재정적 적절성을 확인하여, 재정 효율성 및 원활한 사업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점검항목 ○ (핵심질의 1: 근거 기반 사업 규모 도출의 적절성) 사업비 규모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적절한 규모로 추정되었는지를 확인 - (분석 관점) 부처에서 제출한 사업 규모 또는 사업비의 도출 근거 및 논리가, 유사 사례분석·통계분석·전문가 의견 등 일반적인 비용추정 방법론에 비추어 합리적인지를 검토 - (중점 준비사항) 사업비 규모 산출의 근거와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유사사례 비교 등 객관적인 비용추정 방법론에 기반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 ○ (핵심질의 2: 재원조달 방안) 지출한도를 고려한 재원조달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를 점검 - (분석 관점) 중앙정부 재원조달 방안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해당 연구분야의 투자 추이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며, 재원조달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위험확률 및 영향을 함께 확인 - (중점 준비사항) 중앙부처의 지출한도를 고려한 재원조달 방안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부합하게 제시하고, 조달 시기·방식이 사업 일정과 부합함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 ○ (핵심질의 3: 정부/민간 분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민간, 지자체 등과의 재원분담 방식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를 판단 - (분석 관점) 재원분담 주체별 분담 비율·방식이 관련 법령·지침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연차별 예산투입 규모 및 조달 가능성 등을 위험식별과 위험분석의 관점에서 검토 - (중점 준비사항) 재원분담 방식이 관련 법령·지침의 분담기준에 부합함을 제시하고, 재원부담 주체별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 및 조달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 □ (점검 결과 활용) 사업별 점검결과 및 사업군 내 조정방향은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종합결과를 부처에 통보하고 예산 배분·조정에 연계 ○ (예산배분·조정 연계) 4개 대항목에 대한 항목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종합한 의견을 도출하며, 이는 예산 배분·조정 논의의 기초자료이자 이후 부처의 보완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

- 개별 항목의 점검결과를 단순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기획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에 활용

○ (기획부처 보완 및 예산요구 반영) 점검결과 및 보완 필요사항은 사업기획부처에 통보되며, 부처는 이를 반영한 세부 보완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안 요구 시 이를 반영하여 요구하여야 함

- 기획부처는 점검결과를 단순 참고사항이 아니라 이후 예산 요구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여 사업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반영 여부는 이후 예산 배분·조정 논의 과정에서 재확인

5 '26년 사업계획검토 운영 경과 및 주요 의의

□ ('26년 운영 경과) '26년 사업계획검토는 총 38개 사업, 12개 부처를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체계 하에 187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최초 운영

○ (점검 규모)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 대형 R&D 사업 38개 대상 점검

○ (점검 기간) 약 2.5개월간('26.2.10~4.24) 점검 수행

※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포·시행('26.2.10)에 따라 제도 초회 운영은 2.5개월 단기간 내 수행

○ (참여 인력) 8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70명, 민간전문가 87명, KISTEP 간사 위원 30명 등 총 187명이 참여

□ (사업계획서 주요 미비점) 최초 운영 과정에서 부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요 미비점은 다음과 같음

○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문제 인식의 정성적 타당성은 대체로 인정되나, 이를 뒷받침하는 정량적·객관적 근거 제시가 다수 사업에서 미흡함이 확인

- 국가 개입이 필요한 문제·이슈를 선언적 수준으로 제시하는 데 그쳐, 시장실패·기술격차·공급망 리스크 등을 뒷받침하는 정량 데이터 및 근거 자료 보완이 필요한 사례가 다수 확인

- 기존 사업(선행사업, 유사 소형사업 등)이 이미 추진 중인 상황에서, 신규·대형화 전환에 대한 시급성 논거가 수요 증가·기술환경 변화 등 실질적 근거 없이 제시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사업계획의 구체성) 성과지표(KPI)와 사업목표 간 연계성이 낮아, 성과관리 체계의 정교화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

- 성과지표의 설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지표 달성이 사업의 직접적 기여로 귀결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지적

- 단순 정량지표(논문·특허·건수 등) 위주로 구성되어 실질적 정책효과·산업적 파급효과와의 연계가 미흡

- (유사 중복성) 부처 내·외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역할분담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
 - 부처 내·외 유사사업·선행사업과의 통합·연계 또는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차별성이 있다"는 주장에 그쳐, 신규 사업으로서의 추진 당위성이 부족
 - 중복 방지를 위한 실질적 연계·조정 방안(공동 로드맵, 협의체 운영 등)이 개념적 수준에 머물러, 실행력 있는 장치로 보기 어려움
- (사업 규모의 적정성) 예산 산출근거의 객관성과 재원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다수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취약함
 - 과제단가·총사업비 산출근거가 단가·물량·기간이 아닌 기존 예산 대비 배율 등 형식적 기준에 머물러, 유사사업 대비 현저한 단가 편차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함
 - 정부·민간 분담 비율의 설정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사업 특성(공공재적 성격, 상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분담 구조가 반복적으로 지적

〈표 8〉 '26년 사업계획검토 수행 사업의 주요 보완 필요사항

대항목	공통 미흡사항	주요 보완 필요사항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문제 정의 및 시급성 근거의 정량성 부족	• 문제/이슈가 선언적·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국가 개입 필요성이 막연함 • 신규/대형화 추진의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정량적 근거(수요, 기술격차 등) 부족
사업계획의 구체성	성과지표(KPI)와 사업목표 간 연계성·객관성 부족	• 지표가 사업의 직접적 기여도를 반영하는지 불분명 • 목표치 산출 근거 부재, 단순 정량지표(논문·특허 등) 위주 구성
유사 중복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차별성 근거 미흡	• 부처 내·외 유사사업과의 역할분담·차별성을 구체적 비교자료 없이 “주장” 수준으로만 제시 • 기존/선행사업과의 통합·연계 방안 없이 신규 사업 형태로 구성
사업 규모의 적정성	예산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계획의 실효성 부족	• 과제단가·총사업비 산정 시 단가·물량·기간 기반의 상향식 근거 미제시 • 유사사업 대비 단가 편차(상회/하회)에 대한 설명 부족 • 정부·민간 분담비율 설정 근거 미흡

□ (주요 의의) 대형 R&D 사업의 기획 완성도를 사전에 점검·보완함으로써, 예산심의 연계 강화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기획 완성도 제고) 사업계획검토를 통해 필요성·시급성, 계획의 구체성, 유사·중복성, 규모의 적정성 등 기획 내용 전반의 논리적 정합성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여 부처의 자체 기획역량 제고에 기여
- (예산 편성 연계) 검토예산 대비 예산요구·예산반영 규모가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양상이 확인되어, 검토 결과가 부처 자체조정 및 재정당국 조정 과정에 연계되어 작동한 것으로 해석 가능
- (신속한 사업 착수 지원) 예타 대비 짧은 기간 내 검토를 완료함으로써, 대형 R&D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정책 집행의 시급성에 대응

6 향후 과제 및 정책 제언

- (제도 개요 및 기대효과) 사업계획검토는 대형 R&D 사업의 신속한 투자와 유연한 기획 점검·보완을 위해 도입된 신규 제도로, 그간의 R&D 투자 병목현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제도 안착 및 예산 배분·조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제도 보완과 부처의 협조가 필요
 - 신규 제도인 만큼 운영 기반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며, 부처 사업기획 과정의 공통 미비사항도 함께 확인되고 있어, 향후 법·제도 정비, 부처 기획역량 제고, 예산 배분·조정과의 연계 강화 등 다각적 차원의 보완이 요구됨
- (법·제도 정비) 사업계획검토가 초기 운영 단계인 만큼 실제 운영 경험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 및 고시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
 -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 및 부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관련 법령·고시 개정과 세부 운영기준 정비에 반영하여 제도적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
- (부처 기획 역량 제고) 사업계획서의 공통적 미비점을 감안할 때 점검 기준 및 작성 지침의 충실한 사전 안내와 함께 주기적인 교육 운영을 통해 부처의 사업기획 완성도 제고 도모
 - 점검기준 및 작성지침을 사전에 배포하되, 사업 분야별 특성과 그간의 미비 사례를 반영한 설명회·교육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사업기획 역량을 제고
- (예산 배분·조정 연계 강화) 사업계획검토 결과가 부처의 사업기획 보완 및 예산요구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에서는 결과에 대한 환류를 명확히 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활용도 제고 필요
 - 검토 결과가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 및 예산심의 자료에 실질적으로 연계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에서는 결과에 대한 환류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

참고 1

〈표 9〉 R&D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 신·구조문 대비('26.2.10 개정 및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의미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생략) 3.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개정, 2026.2.10.)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2026.2.10.) 2. (생략) 3. 삭제(2026.2.10.)	•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연구개발사업(구축형)이며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 건설공사를 포함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 • 예타 대상 사업에서 연구개발사업 제외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8조의3 (삭제, 2026.2.10.) -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를 과기정통부에 위탁한 근거 삭제

〈표 10〉 사업계획검토 시행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신·구조문 대비('26.2.10 개정 및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의미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개정, 2026.2.10.)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후단신설> ④ (생략)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9.(생략) ⑥ (생략) ⑦·⑧ (생략)	① ----- 의견 및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6.2.10.) 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6.2.10.) ④ (생략) ⑤ -----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및 제 12조 -----.(2026.2.10.) 1.~9.(생략) ⑥ (생략)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2.10.) ⑧·⑨ (개정 전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 대형 연구개발사업(구축형 제외)의 사업계획서 제출(매년 10월 31일) •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 수립(매년 3월 15일)에 사업계획검토 결과 반영 • 사업계획검토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과기정통부고시에 규정 • 예산 배분·조정안에 사업계획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획처에 제출(매년 6월 30일) • 국회 상임위 또는 예결위에서 사업계획검토 결과 요구 시 요약한 결과 제출

참고문헌

-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차보고서(2024, 2025)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안)(과기정통부·기재부, 2024.6.4.)
-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과기정통부고시 제2026-15호)
-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과기정통부고시 제2026-41호)
- 국회예산정책처, 나포커스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주요 쟁점」, 2024.7.26.
-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2024.6.4.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R&D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12.10.
- 과기정통부 및 기획처 보도자료, 「연구개발 예타 폐지,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연구 현장의 오랜 염원을 이루다」, 2026.1.29.
-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세계 정상급(글로벌 Top)수준의 투자 시스템 구축으로 기술 추격국에서 선도국으로 도약에 박차」, 2026.2.12.
- 대형 연구개발사업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안)(과기정통부, 2025.11.20.)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KISTEP, 2024.7)
-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7.

저자

KISTEP 사업기획점검팀 이광현 팀장/연구위원 (khlee@kistep.re.kr, 043-750-2605)

KISTEP 사업기획점검팀 권재영 연구위원 (jykwon@kistep.re.kr, 043-750-2584)

KISTEP 사업기획점검팀 장희명 선임전문관리원 (jhm924@kistep.re.kr, 043-750-2535)

| 편집위원 소개 |

전 승 수 선임연구위원

조 성 호 연구위원

박 종 록 연구위원

임 승 혁 연구위원

허 아 람 선임전문관리원